

## 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공고

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(이하 '착한임대인')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. 05. 28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 표창 개요

- (목적)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,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확산 유도
- (대상)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자(개인)
  - '20.2.1. 이후,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일정수준\* 인하한 임대인
  - \* 인하기간동안 평균 10% 이상 인하 / 보증금 인하는 해당사항 없음
  -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
  - 임차인\*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
  - \* 임대인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
  -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(규모)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(변동 가능)
- (신청기간) '21. 5. 28.(금) ~ '21. 6. 25.(금) 18:00
  - \*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
- (선정·수여) 8월 중(예정)

## 2 선정 기준

- 인하기간, 인하 정도, 인하 대상 점포 수,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

### <심사 기준표>

평가지표	세부평가내용	배 점
1. 인하 기간	'20.2.1.~공고일 기간 동안,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간*(3개월 이상)	20점
2. 임대료 인하율	'20.2.1.~공고일 기간 동안,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(10% 이상)	25점
3. 인하 점포 수	'20.2.1.~공고일 기간 동안, 인하해준 임차인 수에 따라 점수 부여	25점
4. 현 시점 인하 유지 여부	'21.5.1.일 이후 인하 중일 경우, 5점 부여 인하가 종료되었을 경우 0점 부여	5점
5. 정성적 요소	임대인의 경제적 여건, 주변 상권에 긍정적 영향,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	25점
합 계	-	100점

\* 여러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경우, 중복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
(A에게 20.3.1~20.12.31인하, B에게 20.11.31~21.3.31 인하→ 13개월 인정)

- 관련 서류를 제출(증명)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
- 기간 : '21. 5. 28.(금) ~ '21. 6. 25.(금) 18:00
- 방법 :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으로 제출
  - \* 신청 서류는 아래 접수처로 ①우편, ②방문, ③전자우편 방법으로 제출 가능.  
단 ③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한글파일(hwp) 및 원본 스캔본(pdf) 파일도 동시 제출

**<방문 접수 및 문의>**

소재지	소관 지방중기청	담당자	유선전화 / 이메일
서울	서울청	심민선	02-2110-6391 / totoduly@korea.kr
경기	경기청	신대순	031-201-6933 / sds8808@korea.kr
인천	인천청	손인수	032-450-1142 / kkddnz@korea.kr
강원	강원청	김태훈	033-260-1622 / rla695@korea.kr
충북	충북청	조윤남	043-230-5321 / cyn2053@korea.kr
충남	충남청	이금범	041-415-0639 / bbs7790@korea.kr
세종	대전세종청	구본주	042-865-6116 / bonjuro@korea.kr
대전			
전남	광주전남청	김한희	062-360-9152 / kim2h0511@korea.kr
광주			
제주			
전북	전북청	김지아	063-210-6433 / kjiaa@korea.kr
부산	부산청	배근국	051-601-5138 / bkk02@korea.kr
경남	경남청	김재범	055-268-2581 / binugaru83@korea.kr
울산	울산청	서정호	052-210-0045 / jseo7@korea.kr
대구	대구경북청	송재근	053-659-2228 / ssong82@korea.kr
경북			

○ 제출 서류 : 필수제출과 선택제출로 구분

**<제출 서류>**

구 분	제출 서류	비 고
필수	공적조서	[서식1] (단, 임대인이 공무원일 경우, 인사기록카드도 별도 제출)
	포상 확인 동의서	[서식2]
	(임대료 인하 전)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료 인하 후) 인하 합의한 사실 증빙하는 서류	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, 약약서, 변경계약서 등
	(임대료 인하 전·후) 세금계산서,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	임대인 및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	
	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	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, 버팀목자금(플러스스 포함) 지급 확인서로 같음 가능
선택	언론 보도내역,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 관련 근거 자료	정성 평가요소에 활용
	현재도 임대료 인하가 지속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	21.5.1일 이후의 금융거래내역 제출

※ 필요시 임대료 인하 증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구 가능

## 4 신청 제한자격

###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- 가)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나)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- 다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라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마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### ②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### 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

- 가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나)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
  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   - 사업장 등기부등본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  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 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⑤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 
추천 가능

⑥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⑦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※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,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,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 제외

⑧ 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

⑨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\* 추천 제한 대상자

\*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 §7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(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) 확인  
특히,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 등인 경우 신청 불가

## 5 추진일정

지방중소기업청			중기부(본부)		지방중기청
신청·접수	▶ 사전평가	▶ 후보추천	▶ 공적심사 위원회	▶ 명단 확정	▶ 시상
5/28(금) ~ 6/25(금)	7월 초순	7월 중순	8월 초순	8월 초순	8월 중순

※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

## 6 기타 사항

### ○ 공적조서 작성방법

-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, 행간 160%이하
-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
-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, 이전 포상실적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

### ○ 공적사항 기재방법(공적요지 충실히 작성)

-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
-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,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
  - \* (예시) 임차인 3명에게 20.4~21.1월간 총 25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
- 공적조서의 작성 분량은 총 2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,  
참고자료나 증빙서류의 분량 제한은 없음

### ○ 공적사항 및 기타 관련문의 등은 지방중기청 담당자에게 확인 (p3, 지방청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)

**별첨****관련 서류**

□ (서식 1) 공적조서

**공 적 조 서**

성 명	홍 길 동 (한자)		洪 吉 童
주 민 번 호 * ( 생 년 월 일 )	123456-1234567	군번(군인의 경우)	-
	(123456)	국적(외국인의 경우)	-
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(우 123456)		
직 업		소 속	
직 위		직 급 · 계 급	-
추 천 훈 격	중소벤처기업부장관	추 천 순 위	(추천관이 작성)
공 적 분 야	산업경제	공 적 기 간	(임대료 인하기간)
공적요지(70자 이내)			
<b>조 사 자</b>			
소 속			
직위(직급·계급)		성 명	(서명 또는인)
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2021년 월 일			
추천관	직 위	성 명	관인

\*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입할 것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력사항
과거 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
수여일(연 월 일)	
공 적 내 용	
(공적 내용을 작성)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2페이지 이상 추가 작성 불가</p>	

※ 임대인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,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별도 제출(지방청 문의)



□ (서식 2) 동의서

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

■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 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“신고의무 사항”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 제1호의 “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※ 「상훈법」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1. . .

성명 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

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